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55954 주식대금

원 고 일진머티리얼즈 주식회사

피 고 1. A 주식회사

2. B

변 론 종 결 2015. 3. 17.

판 결 선 고 2015. 4. 17.

주 문

- 1. 피고 B는 원고에게 일본 통화 200,100,000엔 및 이에 대한 200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본 통화 200,100,000엔 및 이에 대한 2008.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해동박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일본 기업으로서 스텐트(Stent, 혈관폐색 등을 막기 위해 혈관에 주입하는 심근경색 치료용 의료기구)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8. 4. 3. 피고 회사,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8 00주(무액면,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0,100,000엔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4. 30. 피고 회사에게 200,100,000엔을 지급하여 그 무렵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800주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 2호증).

제5조 - 투자자(원고를 말한다)와의 사전 협의

발행회사(피고 회사를 말한다) 및/또는 발행회사의 계열사가 다음 중 어떠한 행위라고 이행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와 협의하고 그에 대한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서면 동의는 불합리하게 철회되거나 지연되지 아니한다.

(1) 스톡 옵션이나 주식 보상(stock grant), 신주인수권부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종류를 불문한 주식의 발행

- (2) 합병, 주식의 교환, 주식양도, 사업양도 혹은 인수, 자본감소, 자본구조의 변경, 기업분할 등 중대한 사안의 이행 의결
- (3)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설립 또는 변경
- (4) 지적재산, 기계 또는 생산시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요 자산의 매각 또는 양도

제6조 - 정보공개의 의무

발행회사는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계열사들에 대한 다음 종류의 정보를 영어로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1) 법,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작성된 매년 회계결산기에 관한 재무제표와 세부설명 및 감사보고서
- (2) 반기 혹은 분기별 결산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재무상태
- (3) 월별 경영활동 현황(월별 재무제표 및 월별 현금흐름표 포함)
- (4)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 (5) 발행회사의 지분구조 혹은 주주의 변동
- (6) 최초 사업계획상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제11조 - 주식의 매매

11.1 다음 (1), (2), (3) 및 (4)호에 명시된 경우 발생시, 투자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본인이 소유한 대상 주식을 일부 또는 전부 발행회사 및/또는 회사소유주(피고 B를 말한다)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투자자는 이에 대해 발행회사에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발행회사 및 회사소유주는 투자자가 진행하는 해당 대상 주식의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내부 기업 절차에 있어서 최대한 협력을 제공한다.

- (1) 발행회사 주식의 공모 또는 발행회사의 매매가 본 계약 체결일 후 5년 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
- (2) 사유와는 관련 없이 발행회사의 영업 전체 또는 중요 부분이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단, 발행회사의 해당 영업이 파업, 화재, 홍수, 정부행위 또는 그 외 통제 범위를 벗 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고 발행회사의 의도 또는 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는 제

외한다.

- (3)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4조, 제6조 및 제8조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해당 조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된 문서 또는 그 외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어떤 중대한 측면에서 불충분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 (4) 본 계약 제11.1 (2)조를 제외하고 발행회사 또는 회사소유주가 본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해당 불이행에 관하여 불이행 당사자에게 항의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해당 불이행을 치유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불이행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

11.2 본 계약 제11.1 (1)조 또는 제11.1 (2)조 하에서의 매입가격은 앞서 말한 대상 주식을 발행회사 및/또는 회사소유주에게 매매할 당시의 현재가로 산정한다. 본 계약 제11.1 (3)조 또는 제11.1 (4)조 하에서의 매입가격은 (가) 투자자가 대상 주식을 인수시 지불한 매입가격에 연 10% 이율의 이자를 더한 것과 (나) 대상주식을 발행회사/회사소유주에게 매매할 당시의 현재가 중 더 높은 값으로 산정한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사업 중 약물방출 스텐트(이하 'DES'라 한다)의 개발기간을 2010.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설명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2. 12. 17. 원고를 방문하여 DES 개발기간이 2010. 7.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최초의 사업계획보다 3.5년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일본어로 작성된 '개발진착상황'이라는 자료를 교부하였다(갑제4호증).

라. 피고 회사는 2013. 2. 22.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을 732,000,000엔에서 50,000,000엔으로, 자본준비금을 1,008,990,850엔에서 422,907,450엔으로 각 감소(이하'이 사건 자본감소'라 한다)하는 안을 의결하였고, 이후 1개월간의 최고기간을 거쳐 20 13. 3. 27.자로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하였다(을가 제1호증, 을나 제10호증). 감소된

자본준비금 586,083,400엔은 기타 자본잉여금에 대체되어 이월이익잉여금의 결손을 보 전하게 되었다.

마. 이 사건 자본감소 결의 이전에는 C가 5,350주(지분율 39.9%)를, 피고 B가 1,307 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C가 일부 주주의 주식을 양도받아 7,220주(53.8%)의 과반수 주주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피고 B도 다른 주주의 주식을 양도받아 1,457주 (10.9%)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원고는 주식수 및 지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6호증의 1, 2, 을나 제7호증의 3, 을나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 항변의 요지

-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4조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도쿄 또는 서울의 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일본회 사로서 서울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도쿄의 법원에도 관할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관할법원은 도쿄 법원이다.
- 2) 국제사법 제2조에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증거는 일본에 존재하고, 준거법으로 일본법이 적용되며, 대한민국은 이 사건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
 -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대한민국 법원 또는 외국법원을 배타적인 관할로 정하는 전속적 국제관할합의

가 아니라 국내법원과 외국법원을 선택적인 관할로 정하는 내용의 국제관할합의는 민사소송법 제29조가 정하는 일정한 방식을 갖출 경우 당사자 간에 유효하게 성립될 수있고, 이때에는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이 요구하는 합의된 관할법원과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4조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도쿄 또는 서울의 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문언 자체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소를 서울의 지방법원 중 하나인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합의에 의하여 인정된 관할이므로 피고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또는 이 사건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을 갖는지 여부는 이 법원의 관할권 유무에 아무런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정보제공의무 위반

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① 재무제표와 세부설명 및 감사보고서, ② 반기 혹은 분기별 결산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재무상태, ③ 월별 경영활동 현황, ④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⑤ 발행회사의 지분구조 혹은 주주의 변동, ⑥ 최초 사업계획상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의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특히 DES 개발기간 이 2010. 7. 1.부터 2018. 12. 31.까지로 변경되어 최초의 사업계획보다 3.5년이 연장되 었는데 DES 개발 및 사업화는 피고 회사의 사업계획 중 핵심사항일 뿐만 아니라, 당초 개발기간인 5년의 70%인 3.5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최초 사업계획상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당 정보를 지속적으로 영문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계약상 중요한 의무 위반

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5조에 따라 자본감소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협의하고 원고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와 협의를 하지 않았고 서면 동의도 받지 않은 채 2013. 2. 22.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였다. 이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중대한 계약위반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11.1 (3), (4)항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계약에서 정한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준거법

가) 국제사법 제1조는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 자의 국적·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국적이 상이하고 계약의 주된 내용인 주식의 발행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그 준거법 선택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특징적인 요소는 피고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는 것인데, 피고 회사는 일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고, 피고 회사는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주식의 발행과 인수 등에 관하여도 일본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일본으로서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 역시 일본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정보공개의무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이 부부 주장은 피고 회사가 제6조에서 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6조의 영어 원문은 'D uty to Disclose Information'이라는 제목으로 "The Issuing Company shall continuously disclose the following types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 Issuing Company and the Issuing Company's Affiliates to the Investor in English"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disclose'의 의미는 정보의 '제공'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이 보다 넓은 '공개'의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피고 회사가 제6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우선, 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6조의 ① ~ ⑤ 정보들은 회사가 관련 법 령에 따라 작성·보관되거나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보관되는 서류로 보이는데, 원고가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을나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매년 사업진행 상황의 주요 내용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들에게 보고해 왔고 원고가 요청한 경우 이메일을 통해 같은 자료를 송부한적도 있는 사실, 위 자료에는 DES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사업의 개괄적인 진행상황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매년 정기적으로 주요 사업의 개괄적인 진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작하여 주주총회에보고하거나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송부한 이상, 그 자료에 사업 진행상황이 변동된 부분에 관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거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수시로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피고 회사가 이사건 주식매매계약 제6조의 정보공개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특히 문제를 삼는 DES 개발사업의 진행상황도 위와 같은 자료에 매년 포함되어 설명되고 있었고, 그 내용에 비추어 이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DES 개발 일정이 점차 지연되고 있음을 파악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DES 개발사업의 진척상황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별도로 문의하였는데도 피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DES 개발사업 지연에 관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상당 기간 은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수 없다(원고가 DES의 개발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2012. 12. 7.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커다란 불만을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6조에서 정한 정보를 일본어로만 제작하였을 뿐 영문을 된 자료는 별도로 제작한 바는 없고, 그동안 원고 역시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영문으로 제작하여 공개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위 정보공개의무를 위반하면 원고가 거액의 주식인수대금을 상당한 이자와 함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점 및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6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의무는 그 성질상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의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영문으로 정보공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기위해서는, 적어도 원고가 관련 정보를 영문으로 제작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고회사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상당 기간 지체한 경우 포함)이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마) 결국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계약상 중요한 의무 위반 여부

- 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5조 위반 여부
- (1) 피고 회사가 2013. 2. 22.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을 732,000,000엔에서 50,0 00,000엔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자본감소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회사가 그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5조에서 정

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B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이후 2009. 6. 29.자 자본감소 결의 때에는 원고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으나, 2009. 8. 25.자 임시주주총회 이후부터는 자본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로부터 이메일이나 구두로 동의를 받거나 원고의 담당자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하였고 별도로 서면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위 2009. 8. 25.자 임시주주총회 이후부터는 자본감소 등 결의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내용이 묵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5조를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5조의 내용이 원고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만, 이 사건 자본감소 결의 전후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감소 결의에 관한 원고의 동의 의사표시가 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는 등 자본감소 결의에 관하여 단지 원고의 서면 동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될 여지는 있을 것이다.

피고들은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자본감소 결의가 있기 이전에 원고에게 해당의안이 포함된 임시주주총회 개최 통지서를 송부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임주주주총회 개최일 이전에 아무런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본감소

결의가 있었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음에도 반대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돌연임시주주총회가 끝난 후 원고의 담당자가 이 사건 자본감소에 반대한다는 취지를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서면 동의가 없더라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제5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이 사건 자본감소 결의가 이루어졌던 2013. 2. 22. 임시주주총회소집 통지서를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에 관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일 이전에 이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보낸 적이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임시주주총회소집 통지서의 내용은 그 제목처럼 임시주주총회의 개최사실을 알리는 내용에 불과하고, 질문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내용도 있기는 하나 이를 가리켜 자본감소 결의에관하여 원고에게 사전 협의를 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주주총회에 상정된의안에 관하여 반대의견이 있는 주주는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는 것이므로,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일 이전에 소집통지서 내용을 살펴본 다음 미리그에 관한 의견을 회사에 통보하는 내용의 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가 2013. 2. 22.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자본감소 결의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원고를 대리한 직원 E, F을 일본에 출장까지 보내었고, 당시 원고의 방침은 이 사건 자본감소 결의에 반대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위 임시주주총회 직후 피고 회사 측에 그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기재한 서면까지 제출한 점(갑 제3, 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임

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자본감소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 측 직원들이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본감소 결의에 반대한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총회 결의 요건 충족여부에 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물론 원고의 보유지분은 6%에 불과하여 결의 요건에 영향을 미칠 정도도 아니었다), 이는 이사건 자본감소 당시 원고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관한 피고 회사의 책임제한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없다. 즉 원고가 적어도 위임시주주총회 직후 이 사건 자본감소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피고 회사에 제출한것이 분명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자본감소에 관한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는 피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명백하게 전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자본감소 결의 전후에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자본감소에 실질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있거나 원고의 서면 동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이 심히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5조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계약상 중요한 의무인지 여부

(1) 피고들은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자본감소는 일본 정부의 공적 보조금을 지급받고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무상감자로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피고 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자본감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2)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은 무액면주식이고 이 사건 자본감소는 주식 수의 변화 없이 자본금만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이와 같이 감소된 자본준비금 58 6,083,400엔은 기타 자본잉여금에 대체되어 이월이익잉여금의 결손을 보전하였던 사실, 이 사건 자본감소는 이와 같이 회사재산이 주주에게 유출되는 실질적 자본금감소는 아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분율이나 주식의 가치에 관한 산술적인 변화는 없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 회사가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이 사건 자본감소 결의를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주식매 매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① 특정 회사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로서는 해당 회사에 대한 경영을 적절히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투자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수단·방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5조에서는 자본감소를 포함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고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고 회사는 자본감소 등 행위를 금지하는 형태의 경영통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단순히 협의할 것을정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 경우에 따라 동의의무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소수주주에 불과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에 대한 매우 강력한 형태의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위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삽입한 것은 적어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피고 회사의 자본감소 등에 관한 사항이 원고가 피고 회사 발행의 주식을 인수하는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결손보전 목적의 무

상감자가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② 피고 회사와 같이 이익잉여금이 결손에 빠져 있는 회사에서 무상감자를 통해 이익잉여금을 0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신주발행시 액면미달 발행을 회피할 수 있고, 재무상태의 실질적 변화가 없음에도 재무제표상 배당가능한 잉여금이 조기에 발생할수 있다. 일본 회사법도 우리나라 상법과 마찬가지로 무상감자의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자본감소와 같이 주주들의 지분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점만 보더라도 그것이 주주들에게 단순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자본감소에 나아간 것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가)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11.1 (4). 11.2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200,100,000엔 및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 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위 200,100,000엔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

어야 한다. 한편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매수대금 지급채무를 포함한 주식매매계약에 적용될 준 거법이 일본법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들의 금전채무 의 지급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정은 일본 회사법상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특히 피고회사는 일본 회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배당가능액이 없는 회사이므로 원고의 주식매수대금 청구는 부당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일본 회사법의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5조

주식회사는 다음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三 다음 조 제1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제156조(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결정)

- 1. 주식회사가 주주와의 합의에 의해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다음에 기재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취득하는 주식의 수(종료 주식 발행 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
 -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교환으로 교부하는 금전 등(당해 주식회사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 있어서 동일하다)의 내용 및 그 총액
 - 三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157조(취득가격 등의 결정)

- 1. 주식회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다음에 기재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취득하는 주식의 수(종류 주식 발행 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그 주식 1주를 취득하는 것과 교환으로 교부하는 금전 등의 내용 및 수 또는 금액 또는 이들의 산정 방법
- 三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교환으로 교부하는 금전 등의 총액
- 四 주식 양도 신청의 기일

제158조(주주에 대한 통지 등)

1. 주식회사는 주주(종류 주식 발행회사는 취득하는 주식 종류의 종류주주)에게 전조 제1 항 각 호에 기재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제160조(특정 주주로부터의 취득)

1. 주식회사는 제156조 제1항 각 호에 기재한 사항의 결정과 아울러 동항의 주주총회 결의 에 따라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특정 주주에게 행한다는 취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61조(배당 등의 제한)

- 1. 다음에 기재한 행위에 의해 주주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동일하다)의 장부가액의 총액은, 당해 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분배가능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그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근거한 당해 주식회사 주식의 취득
- 2. 전항에 규정하는 분배가능액이라 함은 제一호 및 제二호에 기재한 액의 합계액에서 제 三호에서부터 제六호까지 기재한 액의 합계액을 감하여 나온 금액을 말한다(이하 이 절 에서 동일하다).
- 잉여금의 액
- 그 임시계산서류에 대해 제441조 제4항의 승인(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 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에 기재한 액
- 三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 四 최종 사업연도 말일 후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당해 자기주식의 대가
- 五 제二호에 규정하는 경우 제441조 제1항 제2호의 기간 손실액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각 계산과목에 계상한 액의 합계액
- 六 전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각 계산과목에 계상한 액의 합계액
- 2)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일본 회사법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

연히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 회사법의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가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취득의 대가로 교부하는 금전의 장부가액 총액은 당해 행위가 효력을 발생한 날의 분배가능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판단

이 사건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중 피고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부과하는 약정은, 피고 회사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데,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자본감소 결의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일본 회사법 제461조 제2항에 규정된 분배가능액이 전혀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고는 분배가능액이 없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고 그 매수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허윤범

판사 정윤주